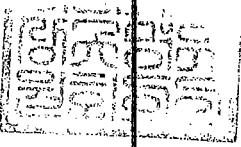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명	한글	한국정	일본명	
	한자	韓國正	이명	
출생연월일	미상		시망연월일	미상
	본적			
미상				
주요경력	1904년 이전			
	1904년 ~ 1945년			
	1905.6 전후	일진회 평의원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二 부록, 123쪽)		
	1907.11.23	자위단원호회 순회총부 餉官 (같은 자료, 卷之五, 50쪽)		
1908.11	일본정부로부터 훈7등 서보장 받음 (서훈 권7, 외국인 5, 1908)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자위단원호회의 조직 및 목적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五, 문명사, 1911, 45쪽.

“(1907년 11월 8일) 지방 폭도를 귀화케 하고 양민을 安業케 할 방략으로 자위단을 결정 공포하다.”

▶ 「자위단원호회 취지」, 흑룡회 편, 『일한합방비사』 상, 원서방, 1966, 379쪽.

“(중략) 그러므로 우리 재경동포는 자위단을 원호하기 위해 위로부터 먼저 자위단원호회를 조직하여 일반의 기맥을 상통하고 방침을 運籌하여 협심일치 裨民을 교화하여 양민으로 삼고, 폭도로 하여금 自首服罪하게 하여 내외동포와 더불어 안락을 누리게 할 것을 도모한다. (중략)

음희 원년 11월 일”

▶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9일 2면, 「자위단 파송」.

“일진회에서 의병을 진압하기로 자위단이라고 실시하여 일간에 각 지방으로 파송한다는 말이 있다더라.”

▶ 『황성신문』, 1907년 11월 10일 2면, 「자위단 조직」.

“각 지방의 불온함을 인하여 진압할 방략을 내각 제대신이 간간이 협의하고 일진회에서도 협의하였다고 각 신문에 揭報한 바이니와 更聞한즉 일진회에서 진압방침을 협의하였다는데 자위단을 조직하여 각 불온한 지방으로 파송케 한다더라.”

2) 한국정과 자위단원호회 순회총부의 활동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五, 48-50, 52쪽.

“(1907년 11월 23일) 자위단원호회 위원 각부 및 순회총부 일행이 지방으로 각기 출장하였는데 출장지방구역과 인원씨명이 아래와 같다. (중략)

순회총부장 이용구를 수행한 인원이 아래와 같다.

餉官 한국정, 회계 최동섭, 서기 박지양, 통역 한경원”

▶ 『황성신문』, 1907년 11월 27일 1면, 「일진회 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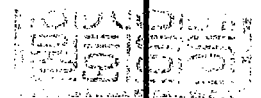
“일진회본부 제원이 지방자위단 조직차로 각 지방을 순회하기 위하여 內田良平 씨 이하 일인 5명과 일진회장 이용구씨 외 23명이本月 23일에 경성에서 發行하였다더라”

▶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15일 2면, 「부장입성」.

“자위단 순시총부장 리용구씨가 지난 십사일 밤에 입성하였다더라”

▶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17일 2면, 「순시장의 행지」.

“자위단 순시총부장 리용구씨는 회원 사십 명을 양복하고 총을 들녀서 영솔하고 순행한다더라.”



2. <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한국정의 서훈과 공적 내용

▶ 「한국 검사 윤갑병 외 105명 서훈 및 賜金の 건」, 『서훈』 권7, 외국인 5, 1908.

“위의 건을 삼가 재가한다.

명치 41년(1908) 11월 7일

내각총리대신 후작 桂太郎

서훈 및 賜金 議案

한국 검사 윤갑병 외 10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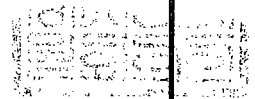
위 사람들은 日露戰役 당시 우리 육군이 한국에 들어갔을 때 물자의 매수, 마차·인부의 징모로부터 숙소와 마구간의 설비, 기타 운수사업을 돕거나 민심의 진정에 노력하고, 적의 동정을 정찰하여 보고하고 간첩을 선발하고 도로·교량의 수리, 軍用電信의 감시, 위생사무 등을 지원하는 등 그 공적이 현저함으로써 부통감의 上奏를 심사하여 勳等 및 賜金額을 결정함이 아래와 같다”

훈등 및 사금액	관직	位	한국훈등	제국훈등	씨명
훈7등 瑞寶章	일진회 지부회장				한국정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二 附錄, 123쪽.

“(1905년) 6월 10일로 같은 해 10월 24일까지 총회장 이용구의 복진수송대 일기 보고가 아래와 같다

(1905년 6월 13일) 본인[이용구-작성자]이 복청을 향해 출발할 때 평의원 이행민, 고청룡, 윤갑병, 김진태, 한정규, 최진섭, 한경원, 한국정, 김달영, 김몽필, 백운기 10여인과 登程 (후략)”



판 단

1. 한국정은 19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위단원호회 순회총부의 향관으로서 자위단의 설립을 선전·독려하였다. 자위단은 의병활동의 정찰 및 귀화, 진압을 목적으로 전국에 조직된 단체였다. 한국정은 순회총부장 이용구를 수행하여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한국정의 이러한 행위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의병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한국정은 1908년 11월 7일 일본정부로부터 훈7등 서보장을 받았다. 1905년 6월 러일전쟁 당시 한국정은 일진회원으로 조직된 북진수송대의 일원으로서 일본군이 러시아군을 이기도록 협력하였다. 이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한국정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